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18
----------	-------

발의연월일 : 2025. 8. 6.

발의자 : 추경호 · 김기현 · 정동만

권성동 · 이현승 · 김상훈

최수진 · 윤영석 · 배준영

성일종 · 권영진 · 김기웅

박수민 · 최은석 · 박성훈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축·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축·어업인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축·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 및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를 “제5호 및 제9호의2”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12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i)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